#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
# (황은화 의원 대표발의)

| 의안 번호 | 9-848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25. 8. 13.
발 의 자 : 황은화, 박태순, 김재국
최진호, 유재수, 박은경
이진분, 박은정, 선현우
최찬규, 이지화, 한갑수
송바우나, 김유숙, 한명훈
김진숙, 현옥순 의원(17인)

## 1. 제안이유

○ 안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○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○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(안 제5조 ~ 안 제6조)
○ 지원사업 추진 및 사무의 위탁(안 제7조 ~ 안 제8조)
○ 중복지원의 제한(안 제9조)
○ 협력체계 구축(안 제10조)

## 3. 제정조례안 : 붙임 1
## 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2
## 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○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## 6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4

【붙임 1】 제정조례안

#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.
2. “청년”이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.
3. “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”이란 고령 또는 장애,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, 조부모, 형제,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

2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

3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

4.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의 사업계획 등에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6조(실태조사)**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**제7조(지원사업)**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

2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·정서 상담

3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

4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·체육활동 지원

5.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

6.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사무의 위탁)**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9조(중복지원의 제한)**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.

**제10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, 법인·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,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 속 | | 안산시의회 |
|---|---|---|
| 입안자 | 시 의 원 | 황은화 의원 대표발의<br>(행정 3563) |

#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의 안 번 호 | 9-848 |
|---|---|

제안년월일 : 2025년 9월 1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## ☐ 수정이유

○ 「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제정 2025. 3. 25./ 시행 2026. 3. 26. )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계획 관련 조문과 부칙을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수정하고 문맥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함.

## ☐ 주요골자

○ “지원에 관한” 을 “지원하는 데 필요한” 으로 함. (안 제1조)

○ 청년의 정의 인용을 “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” 에서 “「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조제1호” 로 함. (안 제2조제2호)

○ 「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“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” 를 “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위하여” 를 “위하여 시장이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함. (안 제5조제1항)

2025-09-15 10:59:58 ***.***.120.35 의회사무국 정현석

○ 중복지원의 제한 범위에 대해 “다른 조례”를 “다른 법령이나 조례”로 함. (안 제9조)

○ 「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일에 부합하게 부칙 단서조항 “다만, 제5조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”를 신설함. (안 부칙)

2025-09-15 10:59:58 ***.***.120.35 의회사무국 정현석

#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"지원에 관한"을 "지원하는 데 필요한"으로 한다.
안 제2조제2호 중 "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"를 "「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조제1호"로 한다.
안 제5조제1항 중 "수립·시행할 수 있다"를 "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위하여"를 "위하여 시장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안 제9조 중 "다른"을 "다른 법령이나"로 한다.

안 부칙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제5조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2025-09-15 10:59:58 ***.***.120.35 의회사무국 정현석

# 수정안 조문대비표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--- 지원하는 데 필요한 ----------. 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| 제2조(정의) ----------. |
| 1. (생 략) | 1. (제정안과 같음) |
| 2. “청년”이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. | 2. -------- 「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조제1호--------. |
| 3. (생 략) | 3. (제정안과 같음) |
| 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| 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-----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|
|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| ② ----------.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제정안과 같음) |

2025-09-15 10:59:58 ***.***.120.35 의회사무국 정현석

| | |
|---|---|
| 4.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 4. ---------- 위하여 시장이 ---------- |
|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의 사업계획 등에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 <삭 제> |
| 제9조(중복지원의 제한)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. | 제9조(중복지원의 제한) 다른 법령이나 ----------. |
| 부칙 | 부칙 |
|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신설> |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|

2025-09-15 10:59:58 ***.***.120.35 의회사무국 정현석